

(사)대한화장품협회

직인생략

KOREA COSMETIC ASSOCIATION

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, 907(여의도동, 금산빌딩) /전화 070-5057-4019/팩스 02-782-6659
담당부서: 국제협력팀 부서장: 김경옥 부장 담당자: 한종민 대리 e-mail: jmhan@kcia.or.kr

대한장협: 제9-282호

시행일자: 2023.9.25.

수신자: 화장품 영업자 대표이사

참 조

제 목: 식품의약품안전처, 외음부 세정제 부당한 표시광고 주의 안내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-6151호(2023.9.19.) 관련입니다.

3. 최근 일부 외음부 세정제 판매 업체에서 의료기기,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부당한 표시·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니 화장품 업체가 해당 제품 표시·광고시 주의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- 아 래 -

가. 최근 일부 외음부 세정제 판매 업체에서 사용후기(예, 질내 사용), 제품명(예, 이너케어), 용기 형태(예, 주사기), 효능·효과(예, 항균, 항염) 등을 통해 질 내 사용에 대한 내용을 암시적으로 알리는 광고가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의료기기, 의약품 오인 신고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습니다.

나. 외음부 세정제의 질 내 사용은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사용 목적이 질 내 사용인 경우 의료기기(질세정기) 또는 의약품(질세정액)으로 품목허가 받아야 합니다.

다.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앞으로 외음부 세정제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외음부 세정제가 의료기기,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표시·광고하는 업체에 대해 강력히

점검할 예정이며, 화장품법령 뿐만 아니라 성분 또는 표시·광고 내용 등에 따라 의료기기법령 또는 약사법령 적용도 고려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- 라. 아울러 「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」(식약처 고시)에 따라 ‘외음부에만 사용하며, 질 내에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’이라는 문구를 명확히 표시·광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사)대한화장품협회장